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전자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부 또는 모가 전자문서를 이용 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함
-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 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「법원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15152호, 2017. 12. 12. 공포, 2018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관련 규정을 정비함
- O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제10조의 식별부호 사용승인(해지) 신청은 식별부호사용승인(해지) 에 관한 기록에 편철해야 하고, 제11조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공무 원명부에 해야 하므로,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의 편철 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15조)

-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전자카드식공무원증의 주민등록번호 가 삭제됨에 따라, 가족관계등록정보 대상자를 특정하여 신고사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제외함(안 제32조제 2항)
- O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의2제1항제5호 신설)
- O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작성자에 사법보좌관을 추가함(안 제78조제2 항)
- 법 제96조에 따른 허가사건 명칭을 "창성 창본 허가"에서 현재 법 령상 용어인 "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"로 통일함(안 제87조제1 항제1호)
- 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
- 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"제7조부터 제14조까지"를 "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"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"신고와 최고"를 "신고"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"국제운전면허증, 전자카드식공무원증"을 "국제운전면허증"으로 한다.

제36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,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

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판사가"를 "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"로 한다.

제87조제1항제1호 중 "창성 창본 허가"를 "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

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아 햀 제15조(보고서의 편철) 법원은 제 | 제15조(보고서의 편철) -----제 7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 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2조부터 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제14조까지-----편철하여 보존한다. 제3장 신고와 최고 제3장 신고 제32조(신고인 등의 확인) ① (생 제32조(신고인 등의 확인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법 제23조제2항의 "그 밖에 (2) - - - - - - -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---- 국제운전면허증----명서"는 국제운전면허증, 전자 카드식공무원증,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. 제36조의2(전자문서를 이용한 신 제36조의2(전자문서를 이용한 신 고)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 **立**) ① -----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______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 <신 설> 46조제1항,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

제78조(확인서 등의 작성·교부) 제78조(확인서 등의 작성·교부)

- ① (생략)
-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 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다.
- 1. ~ 4. (생 략)
- ③ ~ ⑤ (생 략)
- 제87조(허가사건의 처리절차) ① 제87조(허가사건의 처리절차)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 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.
 - 1. 법 제96조에 따른 창성 창본 허가
 - 2. ~ 4. (생 략)
 - ② ~ ⑥ (생 략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--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--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1. -----국적취득 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771